

의학전문대학원건강관리세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(이하 '본 대학원'이라 한다)의 재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세칙은 대학원의 재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건강검진) 대학원에서는 재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시행한다.

① 건강검진의 대상은 신입생과 임상실습 진입을 앞둔 재학생은 필수로 하고, 이 외 재학생은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시행할 수 있다.

② 신입생은 입학 전까지, 임상실습 진입을 앞둔 재학생은 임상실습 전까지 건강검진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건강검진은 부속병원 및 협력병원 건강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시행한다.
(개정 2014.01.10.)

제4조(예방접종검사 및 비용) ① 예방접종검사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한다.(개정 2014.01.10.)

② 예방접종 검사결과 예방접종이 필요한 학생은 본인 부담으로 접종을 실시하며, 접종 후 접종확인서를 임상실습 이전까지 학생부로 제출한다. (신설 2014.01.10.)

③ 접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상실습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 (신설 2014.01.10.)

④ 예방접종 종류는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 (신설 2014.01.10.)

제5조(건강관리위원회) ① 본 대학원의 학생부 산하에 건강관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.)를 두며, 이의 구성은 대학원 소속 전임 교수 및 교직원들로 구성하며, 위원장 1명, 간사 1명, 학생대표 1인, 위원 약간 명을 필수로 한다. 학생부장과 상담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(개정 2014.01.10.)

② 위원회는 학생 건강관리에 관련하여 제반 업무를 기획, 시행 및 평가한다.

제6조(상담실) ① 위원회 산하에 상담실을 두며, 대학원 소속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상담실장으로 임명한다. (개정 2014.01.10.)

② 상담실에서는 학생들의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 문제를 상담한다. 시행 업무의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.

③ 상담실은 재학생에게 선별검사용 정신건강 설문을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대해서 원하는 재학생에게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실시한다.

2-3-7~2 제2편 학 칙

④ 본 대학원 1학년 재학생의 경우, 건강 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차적으로 메디컬캠퍼스의 보건실을 이용한다.

제7조(부속병원이용) ① 본 대학원은 필요시 재학생이 부속병원 및 협력병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 (개정 2014.01.10.)

② 재학생이 부속병원 및 협력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협력기관진용 창구에서 1차 상담을 받은 후 진료과목이나 진료의사를 결정하여 이용한다. (이용시부속병원 및 협력병원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) (개정 2014.01.10.)

부 칙

이 세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4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